

 금융감독원	보도 참고	금융은 틀 틀 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보도	2022.12.8.(목) 조간	배포	2022.12.8.(목)		
담당부서	금융상품심사분석국 심사분석총괄팀 보장상품심사팀	책임자 담당자	부국장	정관성	(02-3145-8230)
			팀장	주요한	(02-3145-8240)
			수석조사역	박민정	(02-3145-8231)
			조사역	김다연	(02-3145-8243)

[금융꿀팁 200선] <137>

고령자·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- 금융감독원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,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등
-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하여 보도참고자료와 파인(FINE)을 통해 안내하고자 함

<고령자·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>

보험료 할인	<p>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.</p> <p>2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해 보세요.</p> <p>3 서민 나눔 특약을 아시나요?</p>
세제 혜택	<p>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.</p> <p>5 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보세요.</p>
피해 예방	<p>6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추천합니다.</p> <p>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세요.</p> <p>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.</p> <p>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</p>

I . 보험료 할인

1

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

- (개요)**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(도로교통공단)을 받은 경우
 -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*에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3.6 ~ 5.0%를 할인

* <붙임 1> 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
- (적용 대상)** ① 개인용* 자동차보험으로 ②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, ③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

*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
- (할인조건 및 할인율)** ①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* 이상(\approx 5.0% 할인)
 - *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 ~ 3등급인 경우 등
 - ② 온라인*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‘인지능력 자가진단’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(\approx 3.6% 할인)

* 만 75세 이상(의무 교육대상)만 온라인 교육 가능('22.10월 기준)

✓ 유의사항

-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, 특약 명칭, 적용 대상,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
-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,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
※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(safedriving.or.kr)을 통해 문의

2

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해 보세요

- (개요)**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%를 할인
※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(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)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, 상속·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(22.8.1.시행)
- (보험가입 대상)** 주택연금 이용자, 배우자 및 자녀 등
- (이용안내)**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,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(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)

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

- ▶ **(보장내용)**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·루게릭 치매 진단,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,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, 사망, 장해, 입원, 수술 등
- ▶ **(할인내용)** 주계약(사망담보)과 치매진단 특약, 암진단 특약, 항암약물 치료 특약, 재해사망특약,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% 할인
- ▶ **(가입연령)** 각 담보별,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

* 예) 알츠하이머진단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별 가입연령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가입나이
90세만기, 100세만기, 종신	10년납, 15년납, 20년납, 25년납, 30년납	30세 ~ Min(75, (85 - 납입기간)) 세

✓ 유의사항

- 치매보험의 가입·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
- '22.10월말 기준,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·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
※ 향후 참여 보험회사 확대 도모

3 서민 나눔 특약을 아시나요

- (개요)**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, 중증장애인 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
 -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약 3.5 ~ 8.0%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(개인용 자동차, 대면가입 기준)
 - * <붙임 2> 보험회사별 서민 나눔 특약 현황
- (대상 자동차)** 사용 연식,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(보험회사별 차이)

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(개인용 자동차 예시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

- (1)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**기초생활수급자**인 경우
- (2)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(배우자, 부모 및 자녀)이 **중증장애인**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
 - *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('19.6.30.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기준 1~3급)
- **(소득)** 배우자 합산소득 연 4,000만원 이하
- **(자동차)** 비사업용, 배기량 2,0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.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(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)
- (3) 피보험자·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,000만원 이하이고 **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**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(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)
- (4) **만 30세 이상**의 피보험자가 소득,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
 - **(소득)** 배우자 합산소득 연 4,000만원 이하
 - **(자동차)** 비사업용, 배기량 1,6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.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(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)
 - **(자녀)** 만 20세 미만

※ **만 65세 이상** 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**자녀 요건 제외**

✓ 유의사항

- 가입조건에 해당된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을 필요
- 특약 가입조건,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
II. 세제혜택

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

- **(개요)** 피보험자(또는 수익자)가 장애인^{*}인 보장성보험은 ‘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’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^{**}할 수 있으며

*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인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, 「국가유공자법」에 의한 상이자,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

**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음

-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

※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(지방세 포함)

- 일반 보장성보험 : 100만원 한도, 13.2%, - 장애인전용보험 : 100만원 한도, 16.5%

- **(전환 대상)** 생명보험,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(소득세법시행령 §118의4)이 되는 보장성보험*

* 생명보험, 상해보험, 화재·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,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) 등(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)

- **(세제 혜택)** 전환 후 16.5%의 세액공제율 적용(전환 이전은 13.2%)

- **(공제대상 보험료)**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(기본공제대상자)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

✓ 유의사항

-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정하여 적용
-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연납 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

<참고>

일반 보장성보험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후 세액공제액 비교

-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및 적용한도(지방세 포함)
 - 일반 보장성보험 : 100만원 한도*, 13.2% – 장애인전용보험 : 100만원 한도*, 16.5%
 - * 과세기간 중 보장성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여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으로 인정

사례 1

◇ 非장애인 A씨는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1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

- 암보험 1건(연납 보험료 80만원), 다른 보장성보험은 가입하지 않음

<전환 전>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액 : 105,600원 (= 80만원 × 13.2%)

<전환 후>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후 세액공제액 : 132,000원 (= 80만원 × 16.5%)

⇒ 세액공제액 26,400원 (= 132,000원 – 105,600원) 증가

<전환 전>		<전환 후>	
일반 보장성보험	장애인전용보험	일반 보장성보험	장애인전용보험
암보험 80만원	-	-	암보험 80만원
105,600원 (= 80만원 × 13.2%)	-	-	132,000원 (= 80만원 × 16.5%)

사례 2

◇ 장애인 B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건의 보장성보험(총 연납 보험료 250만원)에 가입

- 종신보험 1건(연납 보험료 140만원), 자동차보험 1건(연납 보험료 110만원)

<전환 전>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액 : 132,000원 (=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 100만원 × 13.2%)

<전환 후> 자동차보험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(종신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유지)후 세액공제액 :

297,000원 (= 일반 보장성보험 한도 100만원 × 13.2% + 장애인전용보험 한도 100만원 × 16.5%)

⇒ 세액공제액 165,000원 (= 297,000원 – 132,000원) 증가

<전환 전>		<전환 후>	
일반 보장성보험	장애인전용보험	일반 보장성보험	장애인전용보험
종신 140만원 자동차 110만원	-	종신 140만원	자동차 110만원
132,000원 (= 한도 100만원 × 13.2%)	0원	132,000원 (= 한도 100만원 × 13.2%)	165,000원 (= 한도 100만원 × 16.5%)

!! 가입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납입금액과 한도 등을 감안하여 전환할 필요

5

금융상품 가입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보세요

- (개요) 비과세종합저축(원금 기준 5천만원* 한도)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

*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,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

- 은행 예·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*,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* 주식, ELS, RP, 펀드, 채권 등

※ '23.1.1.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 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

- (가입자격*) 65세 이상 거주자,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제32조), 상이자(국가유공자법 제6조), 기초생활보장법(제2조제2호)상 수급자 등

* 조세특례제한법 §88의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①

- (가입기간) '25.12.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

<참고>

일반 증권저축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배당수익 비교

사례

- ◇ 67세 투자자 C씨는 연 배당수익률이 5%인 주식에 5,000만원 투자(과세율 15.4%)

1) 일반 증권저축계좌로 투자시 배당수익 : 211.5만원(250만원 – 250만원 × 15.4%)

2)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투자시 배당수익 : 250만원(250만원 – 250만원 × 0%)

*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고 가정

⇒ 비과세계좌로 투자할 경우 배당수익 38.5만원(= 250만원 – 211.5만원) 증가

✓ 유의사항

-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은 아님
- 가입자격,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 필요

III. 피해예방

6

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추천합니다

- (개요)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
 -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
- (적용 대상)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
- (안내 및 가입)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,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
- (이용 절차) ①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→ ② 알림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및 신청 → ③ 지정인 지명 → ④ 지정인 동의* → ⑤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→ ⑥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
 - *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정인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(제15조)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지정인 동의 필요

카드론·현금서비스 지정인 알림내용(예시)

카드론	현금서비스
- 이용자(신청인) ◇◇◇	- 이용자(신청인) ◇◇◇
- 대출금액 ××××원	- 이용금액 ××××원
- 이용일자 2022년 ××월 ××일	- 이용일자 2022년 ××월 ××일
- 대출기간 ××개월 (만기일 202×년 ××월 ××일)	
- 상환방식 원금균등	
- 이자율 ××.×%	
- 연체이자율 ××.×%	

※ 알림내용은 카드사별로 차이

✓ 유의사항

-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

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세요

- (개요)** 보험수익자(피보험자)가 치매, 의식 불명,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
 -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

- (적용 대상)** 치매보험, 자동차보험, 질병·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
 -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름

<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>

• 치매보험(치매위험 담보 특약 포함)

- (적용 대상)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*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
 - *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
- (대리청구인 범위) 배우자(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) 및 3촌이내 친족 등

• 자동차보험

- (적용 대상)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,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
- (대리청구인 범위) 민법 1000조*, 1003조**에서 정하는 자
 - * 1. 직계비속, 2. 직계존속, 3. 형제자매, 4. 4촌이내 방계혈족 ** 배우자

• 질병·상해 보험 등

- (적용 대상)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
 - (대리청구인 범위)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(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), 3촌 이내 친족 등
- ※ 적용대상 보험상품,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별·상품별 차이

✓ 유의사항

-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,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여부,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 필요
-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(보험수익자)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하여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 없음

8**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**

- (개요)**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,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
- 숙려기간*제도와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

* 투자자가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(자본시장법 시행령 §68⑤2의2.나.)

1 (숙려기간 제도)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, 고난도금융투자상품* 등에 가입한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

* 원금 20%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,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펀드 등(거래소, 해외증권·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 제외)

- **(거래 확정)** 숙려기간 이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,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

❗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 미확정시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되므로 주의

2 (지정인 알림서비스)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,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*

* 전문투자자 계약, 인터넷 모집계약 등은 제외

숙려기간제도 및 지정인 알림서비스 적용 대상 금융투자상품

구 분	금융투자상품
숙려기간	파생결합증권, 파생상품, 고난도금융투자상품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탁 계약, 조건부 자본증권, 파생결합증권에 50% 이상 투자하는 펀드, 파생상품펀드,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** (금소법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) ** 상기 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 및 일임계약도 포함
지정인 알림서비스	파생결합증권, 장외파생상품, 조건부 자본증권, 자산유동화증권, 후순위 채권, 파생형펀드, 주가연계펀드 등

✓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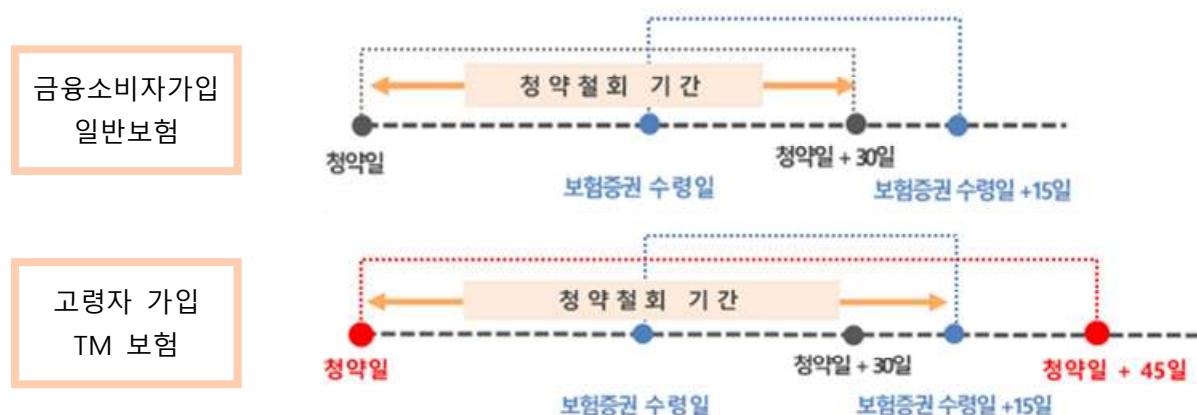
- 숙려기간 제도는 파생결합증권, 파생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만 적용
-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하여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가능

9

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

- (개요)**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,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
 -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(TM 보험)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,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*
- * 보험회사 개별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상이

일반보험과 고령자 가입 TM 보험 청약철회 기간 비교(예시)



고령자 가입 TM보험 개별 약관 청약철회 조항(예시)

- ▶ 제OO조(청약의 철회)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(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 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한다)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- (적용 대상)**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(TM보험)
- (철회 방법)**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*

*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 포함

✓ 유의사항

- 청약 후 45일이 도과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는 불가
- 진단계약,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 불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불임1**보험회사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현황**

회사명	특약명	주 요 내 용
삼성화재	실버(고령자)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할인 특별약관	
현대해상	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	
DB손보	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	- 개인용 차량만 가능 (일부사는 개인 소유 업무용 차량 등도 가능)
KB손보	실버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	
메리츠화재	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	- 기명피보험자 연령은 만 65세 이상
한화손보	실버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	-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 가입
롯데손보	시니어(Senior)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	- 총 납입 보험료에서 할인(일부 담보 할인 제외)
엠지손보	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	- 교육확인증 등의 유효 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 상이 등
흥국화재	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	
하나손보	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	
캐롯손보	고령자 교통안전 할인 특별약관	

불임2**보험회사별 서민 나눔 특약 현황**

회사명	특약명	주 요 내 용
삼성화재	나눔 친서민 특별약관	
현대해상	나눔(서민우대) 특별약관	
DB손보	프로미하트(서민우대 보험료 할인) 특별약관	
KB손보	희망나누기/희망나눔자동차 특별약관	
메리츠화재	행복나눔 할인 특별약관 I	- 회사별로 차종(개인용, 이륜차 등) 및 판매 채널(TM CM 및 대면)에 따라 가입조건과 할인율이 차이
한화손보	나눔(서민우대) 특별약관	
롯데손보	희망나눔(서민우대) 특약	
엠지손보	서민형 나눔 할인 특별약관	
흥국화재	서민우대 할인 특별약관	
하나손보	나눔 특별약관	
악사손보	나눔(서민우대) 특별약관	